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5. 17 선고 2020가단1120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밀알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5. 3.

판 결 선 고 2022. 5. 1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6. 6. 8.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지소 2016. 6. 9. 접수 제170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1. 12. 21. C(개명전 이름 : E)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를 2015. 11. 10.,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각 36.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 주식회사는 2013. 2. 27. F 주식회사에게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3. 5.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F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11. 28.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853774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 2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9,362,211원 및 그 중 2,712,118원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2. 14. 확정되었다.

마. 한편 C은 2016. 6. 8. 자신의 오빠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17058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 이외에도 G에 대하여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에 대한 2022. 2. 10.자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전산정보관리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 주식회사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이미 성립하여 F 주식회사에게 양도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자신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C은 부친의 사망 이후 공동부담하여야 할 비용중 C의 부담 부분을 피고가 우선 부담하고, 이후 C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가 부담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고, C의 채무내역이나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와 C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

별지